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의안번호 : 제 3696 호
- 다. 제출일자 : 2026. 5. 26.
- 라. 회부일자 : 2026. 5. 27.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에 대한 결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3. 결산개요

가. 일반회계

1) 세입결산

세 입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 산 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율(%) (B/A)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 월 액	
2025	1,931	1,931	10,530	10,129	401	0	401	96.2
2024	2,003	2,003	484	77	407	0	407	15.9
2023	2,746	2,746	637	224	413	0	413	35.2

- 2025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세입예산현액은 19억 31백만 원이었으나 실제 105억 3천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이중 101억29백만원을 수납하고, 4억 1백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4억 1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수납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96.2%임.

2) 세출결산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변경 사용	전용	이체	이용	예비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불용율)
2025	7,192	0	0	0	0	0	0	7,192	6,975	0	217 (3.0%)
2024	6,771	0	0	0	0	0	0	6,771	6,577	0	194 (2.9%)
2023	6,942	0	0	0	0	0	0	6,942	6,738	0	204 (2.9%)

- 2025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1억 92백만원으로 이중 97.0%인 69억 75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0%인 2억 17백만원이 발생되었음.

3) 예산의 이용 · 전용 · 이체 · 변경사용

- 예산의 이용은 없음.
- 예산의 전용은 없음.
- 예산의 이체는 없음.
- 예산의 변경사용은 없음.

4)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지출 없음.

5)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 다음연도 이월비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모두 없음.

6)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2억 17백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대비 3.0%에 해당하는 규모임.

집행잔액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응율 (%)	비고
2025	7,192	217	3.0	
2024	6,771	194	2.9	
2023	6,942	204	2.9	

- 발생원인별 내역

-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 2억 17백만원

4. 검 토 의 건

가. 일반회계

1) 세입결산

세 입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 산 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율(%) (B/A)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 월 액	
2025	1,931	1,931	10,530	10,129	401	0	401	96.2
2024	2,003	2,003	484	77	407	0	407	15.9
2023	2,746	2,746	637	224	413	0	413	35.2

가) 개 요

-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세입예산현액은 19억 31백만원이었으나 실제 105억 3천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이중 101억 29백만원을 수납하고, 4억 1백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 4억 1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수납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96.2%임.

나) 세수추계

- 당해연도 징수결정액 105억 3천만원은 예산액 19억 31백만원 대비 545.3%로 총 85억 99백만원이 증가했으며, 이처럼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간의 차를 유발한 주된 세입항목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음.

[표]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가 과다항 항목들

(단위: 백만원)

편성목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b)-(a)	징수결정 내역
경상적 세외수입					
기타이자수입	68	1,720	1,720	1,652	○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 중인 공사비, 소송 판결금에 대한 정산 이자수입이 주요 세입원으로, 세입세출외현금 장기보관금 별단 하지 이자 세입처리 총 48건, 17억 2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위약금	7	158	158	151	○ 서울영화센터 건립공사 지연 배상금 1억 58백만원
그외수입	1,848	8,255	8,242	6,407	○ 공사정산금, 소송비용 환수금 등 타 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으로서 세입세출외현금 장기보관금 해소를 위해 세입처리 진행 총 156건, 81억 58백만원 발생
지난년도수입	8	397	8	389	

-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중 ‘기타이자수입’은 세입·세출 외에 위탁공사비 보관금 및 공사 기성금과 같은 현금을 예탁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입 및 일상경비의 이자수입으로,
 - 이는 세입이 일정치 않아 최근 5년간(’19년~’23년)간 세수 실적을 기준으로 최대·최소금액을 제외한 실적 평균액(6천 8백만원)으로 세입추계하였으나,

[표] 기타이자수입의 최근 5년간 결산액 및 세수추계 산출근거('19년 ~ '23년)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결산액	382	115	71	16	1
○ 세수추계 산출근거 - 최대·최소금액을 제외한 최근 5년간('19~'23) 실적 평균액으로 추계 - (115백만원 + 71백만원 + 16백만원) ÷ 3 = 68백만원 ※ '23년(최소), '19년(최대) 제외					

- 市 재무과의 '세입세출외현금 장기보관금¹⁾ 처리계획(재무과-28984, '25.6.18.)²⁾에 따라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장기보관금(반환기한 5년 이상)을 일제 정리하여 세외수입으로 조치함에 따라

- 장기보관금 정리 과정에서 '올림픽대로 입체화공사 보관금 해

1)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일시적인 보관 성격의 현금으로 사업부서의 청구에 의해 재무과에서 수납 및 반환 처리

- 세입세출외현금 종류 : 보관금¹⁾, 잡종금 등 기타²⁾

¹⁾ 공공시설손실부담금, 계약보증, 입찰보증, 차액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등

²⁾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

장기보관금: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 중 반환기한 종료후 5년 이상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관금

2) '**세입세출외현금 장기보관금 처리계획**', 재무과-28984호, 25.6.18.

-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 중 반환기한 5년 이상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장기보관금에 대하여 채권자 반환 독려 및 세입 귀속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82조(금권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4조(세입세출외현금의 귀속)

□ 장기보관금 처리

- 대 상: 소멸시효 완성된 장기보관금(반환기한 종료 후 5년 이상)
- 처리내용: 부서에서는 채권자에게 반환청구 안내후 반환 및 세입처리요청하여 회계절차 규정 준수
- 처리방법



지 이자' 등 보관금 예치 계좌 해지에 따른 누적 이자(총 48건, 17억 2천만원)가 일시에 세입 조치됨에 따른 것임.

- 다음으로, '위약금'은 공사·용역 준공지연 및 물품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으로 최근 5년간('19~'23년) 실적 평균액으로 추계하여 예산액 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표] 참조),

- 예산액 대비 1억 51백만원 증가한 1억 58백만원을 징수 결정하였는데, 이는 '서울영화센터 건립공사'에서 지체상금 1건이 발생함에 따라 세수추계액과의 차이가 발생한 것임.

[표] 위약금의 최근 5년간 결산액 및 세수추계 산출근거('19년 ~ '23년)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결산액	18	188	4	0	0
○ 세수추계 산출근거 - 최대·최소금액을 제외한 최근 5년간('19~'23) 실적 평균액으로 추계 - (18백만원 + 3백만원 + 0백만원) ÷ 3 = 7백만원 ※ '22년(최소), '20년(최대) 제외					

- 위약금 수입의 증가는 준공기한이 지연된 공사에 대한 적법한 부과 조치이나 결과적으로 공정관리가 원활하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므로 향후 공사관리에도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 '그외수입'의 경우 공사 예산집행 정산금, 소송비용 환수금 등 기타 타 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으로, 예산액 18억 48백만원 대비 징수결정액은 82억 55백만원으로 64억 7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이는 최근 5년간('19년~'23년) 세수 실적을 기준으로 최대·최소금액을 제외한 최근 3년간 실적 평균액(18억 48백만원)으로 세입추계하였으나,

[표] 그외수입의 최근 5년간 결산액 및 세수추계 산출근거('19년 ~ '23년)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결산액	1,016	9,423	1,740	2,789	224
○ 세수추계 산출근거 - 최대·최소금액을 제외한 최근 5년간('19~'23) 실적 평균액으로 추계 - (1,016백만원 + 1,740백만원 + 2,789백만원) ÷ 3 = 1,848백만원 ※ '23년(최소), '20년(최대) 제외					

- 이 역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입세출외현금 장기보관금 처리계획'³⁾에 따라 '올림픽대로 입체화공사 보관금' 등 반환기한이 5년 이상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장기보관금 총 121건에 대한 원금 81억 58백만원이 세외수입으로 일시에 귀속 조치됨에 따른 것임.
- 이번 회계연도에 세입세출외현금 장기보관금을 대거 정리하여 세외수입을 확충한 것은 긍정적인 조치로 볼 수 있으나, 반환기한이 5년 이상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대규모 자금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었다는 점은 도시기반시설본부의 보관금 관리가 다소 소홀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정기적인 현황 파악 등을 통해 예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3) '세입세출외현금 장기보관금 처리계획', 재무과-28984호, 25.6.18.

- 또한, 계약보증금이나 하자보수보증금 등은 사유가 해제되면 채권자에게 즉시 반환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소멸시효가 도래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사전 안내하는 등 행정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음.
- ‘지난연도수입’은 ‘25년도 예상체납액(392,854천원)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19년~‘23년) 평균 징수율(2.1%)을 적용해 예산액 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실제로는 3억 97백만원이 징수결정되었고, 수납액은 8백만원임.
- 최근 5년간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체납액 대비 평균 징수율이 2.1%로 상당히 저조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바, 지난연도 체납액을 적극 징수할 수 있도록 징수 체계 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점검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임.

[표] 지난연도 수입의 최근 5년간 결산액 및 세수추계 산출근거

(단위 : 천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체납액	463,652	649,845	378,991	405,404	412,259
징수결정액	509,285	463,652	403,143	378,992	335,621
결산액	45,633	751	24,151	(3,840)*	0
징수율	9.0	0.2	6.0	0	0
○ 세수추계 산출근거 - '25년 예상체납액(392,854천원)에 최근 5년('19~'23년) 평균 징수율(2.1%)을 반영 - 392,854천원('25년 예상체납액) × 2.1%(평균 징수율) = 8,250천원 · '25년 예상체납액 : 392,854천원 = 412,259천원('23년 체납액) - 19,405천원('19~'23년 평균 증감액) ※ '19년(최대), '22년(최소) 제외 *불납결손액 : 소멸시효 종료, 행방불명, 무재산자 등의 사유로 징수 포기					

다) 미수납액

- 금회 미수납액은 전년(4억 7백만원) 대비 6백만원 감소한 4억 1백만원으로, 건별 내역을 살펴보면 [표]와 같음.

[표] 미수납액 세부 내역

(단위: 원)

연번	과목	과세연월	성명/법인명	과세대상	금액	사유
계					400,693,560	
1	지난연도수입	2014-02	주식회사 내이드	에너지제로하우스건설 서울중앙차법 2013카확 50790 소송비용액확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가합99971 공사대금)	5,476,150	폐업
2		2014-03	김○○(대한불교 천우종무학사)	강남순환 도시고속 도로건설공사관련 토지인도 사건 관련 소송비용액 확정(2013카확50667)	222,830	무재산
3		2016-01	김○○	강남순환 도시고속 도로건설공사 관련 수임자방법원안산지원 2015카확50070 소송비용액(본안 사건 : 2014가단 108577)	430,190	무재산
4		2016-02	박○○	선사로~고덕지구간 도로확장공사 소송비용액 확정 및 판결금	11,760,000	무재산
5		2016-08	김○○	선사로~고덕지구간 도로확장공사 구간내 명도소송비용(2015가단112017)	5,775,120	자금압박 (재산압류)
6		2016-10	유진그린환경(주)	에너지제로하우스 신축공사-소송비용액 확정관련 회수금(서울고등법원 2015카확51010)	499,360	폐업 (재산압류)
7		2017-04	박○○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공사 소송비용액 확정 (2016카확53615)	1,388,080	무재산
8		2017-04	김○○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공사 소송비용액 확정 (2016카확53615)	756,720	무재산
9		2017-09	박○○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공사 구간내 건물철거 집행비용액확정에 따른 비용환수(2016타기100166)	10,276,750	무재산
10		2017-09	김○○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공사 구간내 건물철거 집행비용액확정에 따른 비용환수(2016타기100166)	2,997,320	무재산
11		2018-06	누비종합건설(주) 대표 전○○	성동소방서 신축공사 준공자면에 따른 자연 배상금	172,776,720	폐업 (재산압류)
12		2020-01	도랑기업(주)	G밸리 근로자 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 자연 배상금	84,418,810	무재산
13		2020-07	(주)기공	서남권 50+캠퍼스 경비 정산 부작정 금액 환수금	8,590,000	폐업
14		2022-02	임○○	과년도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액 환수	2,924,130	채납
15		2022-10	국민에코(주)	G밸리 근로자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 준공정산 초과금액 환수	5,284,740	무재산
16		2022-10	예강건설주식회사	G밸리 근로자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 준공 정산금 환수	11,418,340	자금압박
17		2024-07	도랑기업(주)	G밸리 근로자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 선급금 반환	63,483,990	무재산
18	그 외 수입	2025-06	도랑기업(주)	G밸리 근로자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 선급금 반환 이자	12,214,310	무재산

- 미수납액은 지난연도수입 17건에 3억 89백만원과 그외수입 1건에 1천 2백만원으로, 미수납 사유를 살펴보면, 무재산(11건 1억 93백만원), 폐업 또는 부도(4건, 1억 87백만원), 자금압박(2건 1천 7백만원)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참조)

[표] 미수납 사유별 내역

(단위: 백만원)

예 산 과 목		건수	미수납액	비 고
계		18	401	
기타수입		1	12	◦ 무재산 -1건 12백만원
	◦ 그외수입 1건 12백만원 - G밸리 근로자 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 선급금 반환이자	1	12	
지난연도수입		17	389	◦ 자금압박 -2건 17백만원 ◦ 납세태만 -1건 3백만원 ◦ 폐업 또는 부도 -4건 1억 87백만원 ◦ 무재산 -10건 1억81백만원
	◦ 지체상금 2건 2억 57백만원 - 성동소방서 신축공사 준공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 G밸리 근로자 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 지연배상금 ◦ 그외수입 15건 1억 32백만원 - 공사비 정산 환수금 4건 90백만원 · 서남권 50+캠퍼스 경비 정산 환수 · G밸리 근로자 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 준공 정산금 환수(3건) - 소송비용 회수금 10건 39백만원 - 초과근무 부당수령액 등 환수 1건 3백만원	17	389	

- 매년 상당한 규모의 미수납액이 고질적인 체납으로 이어지고 있는바 정기적인 장기체납액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장기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체납자의 납부 여건을 고려하여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실질적인 징수 방안을 강구하여 징수율을 높여야 할 것임.

2) 세 출 결 산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변경 사용	전용	이체	이용	예비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불용액)
2025	7,192	0	0	0	0	0	0	7,192	6,975	0	217 (3.0%)
2024	6,771	0	0	0	0	0	0	6,771	6,577	0	194 (2.9%)
2023	6,942	0	0	0	0	0	0	6,942	6,738	0	204 (2.9%)

가) 개 요

-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1억 92백만원으로 97.0%인 69억 75백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0%인 2억 17백만원이 발생되었음.

나) 집행잔액 (불용액)

- 시설국 소관 당해연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0%인 2억 17백만원으로 지난연도와 비슷한 수준(2024회계연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2.9%)이었음([표] 참조).

[표] 시설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액)	불용율 (%)	불 용 사 유
일반회계	7,192,019	6,975,226	0	216,788	3.0	
공공건축물안전 자문단운영	11,750	11,750	0	0	0.0	
효율적인 청사관리	5,274,156	5,211,533	0	62,622	1.1	-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낙찰차액 및 기타 집행잔액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376,180	362,283	0	13,896	3.6	- 자문위원수당 집행잔액
건설공사장 풍수해 및 제설대책	15,750	15,004	0	745	4.7	- 재난안전대책본부(풍 수해, 제설) 상황실 운영비용 지출잔액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 유지관리	751,175	700,095	0	51,079	6.7	- 계약심사 절감액 및 낙찰차액 - 청렴건설행정시스 템 사업성과보고회 미개최로 인한 미집행 (5백만원)
기본경비	763,008	674,561	0	88,446	11.5	- 국내여비 등 조직운영 경비 집행잔액

○ 먼저, ‘효율적인 청사관리’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⁴⁾에 근거

- 4) 제77조(능력 증진을 위한 사항) 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2021. 10. 8.>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의 제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 2021. 10. 8.>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2021. 10. 8.>
-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5. 5. 18.>

하여 청사 관리, 사무환경 조성 및 개선 등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당해연도 예산현액 52억 74백만원 대비 1.1%인 6천 3백만원을 불용하였는데,

[표] '효율적인 청사관리' 예산 집행내역

(단위: 천원)

구 분	2025년예산편성 (B)	2025예산집행 (A)	불용액 (B-A)	불용률
계	5,274,156	5,211,530	62,619	1.1%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40,609	38,479	2,129	5.2%
사무관리비	4,738,547	4,737,603	943	0.0%
공공운영비	176,663	147,669	28,993	16.4%
국외업무여비	40,000	17,546	22,453	56.1%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80,000	79,992	7	0.0%
특정업무경비	106,200	98,414	7,785	7.3%
자산취득비	92,137	91,827	309	0.3%

- 이는 정보화시스템(정보통신시스템,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용역 낙찰차액으로 2천 9백만원(16.4%)과 근거리 국외 출장 및 단기 체류에 따른 국외업무여비 집행잔액 2천 2백만원(56.1%)이 발생한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음.

- 다음으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유지관리'는 건설정보관리시스템 및 건설알림이의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당해연도 예산현액 7억 51백만원 대비 6.7%인 5천 1백 만원을 불용하였음.

[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유지관리’ 예산 집행내역 (단위: 천원)

구 분	2025년예산편성 (B)	2025예산집행 (A)	불용액 (B-A)	불용률
계	751,175	700,094	51,079	6.7%
공공운영비	665,794	621,200	44,594	6.6%
사무관리비	12,352	6,205	6,146	49.7%
자산취득비	73,029	72,689	339	0.4%

-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운영비 4천 5백만원(6.6%) 불용은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유지관리 용역’ 추진 과정에서 계약심사에 따른 절감액(2천9백만원)과 낙찰차액(1천 6백만원) 등이 발생함에 따른 것이며,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유지관리 용역’ 개요

- 업 체 명 : 보림정보시스템(주)
- 계약일자 : 2024.12.30.
- 용역기간 : 2025.1.1.~2025.12.31.
- 유지관리 내역
 - 법령·지침 개정 및 업무 신설·변경에 따른 시스템 수정
 - 사용자(또는 부서) 요구사항 수집·검토·반영 등 시스템 개선 수행
 - 시스템 속도 및 성능 개선, 데이터 정합성 향상, 기능 오류 수정 등 프로그램 유지관리 수행
 - 조달청, SH공사 등 타기관·타부서 정보시스템 연계 관리 및 개선
 - 사용자 지원 콜센터 운영 및 맞춤형 사용자 교육 실시
 - 건설정보 자료관리시스템(동영상 기록관리) 포함 유지관리 확대 수행
 - 시스템 운영 노후 솔루션 교체, 프로그램 소스 이전 및 시험 수행 등
- 시스템 운영 현황

1. 건설정보관리시스템 - 내부관리용

- 운영기간 : '11년 ~ 현재
- 사 용 자 : 공사 감독관, 시공사, 감리자, 안전관리자 등 공사 관련 담당자
- 주요기능 : 서울시 건설공사 관련 공정·안전·전자문서 및 자료관리 등
- 운영현황 : 관리 진행 사업 사업 3,212개 사업 ('26.5월 기준)
※ 전체 등록 사업 : 총 83,903건 ('12년 ~ 현재)

2. 건설알림이 - 시민공개용

- 운영기간 : '07년 ~ 현재
- 사 용 자 : 시민 누구나 (회원가입 불필요)
- 주요기능 : 건설정보 공개 및 참여서비스, 자치구 맞춤형서비스 제공
- 공개사업 : 총 5,410개 사업 ('26.5월 기준)
- 공개자료 : 13종(사업개요, 공정률, 계약현황, 공사사진, 특정제품소개서 등)

3. 건설정보 자료관리시스템 - 동영상 기록관리 및 통합자료 검색

- 운영기간 : '23. 10. ~ 현재
- 사 용 자 : 공사 감독관, 시공사, 감리자, 안전관리자 등 공사 관련 담당자
- 주요기능 :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이전 사업 통합 자료검색 서비스 제공
- 운영현황 : 건설공사 동영상 14,925건 관리 ('26.5월 기준)

- 사무관리비 중 5백만원(49.7%) 불용은 현재 튀르키예와 추진중인 '청렴건설행정시스템 대외협력사업'의 성과보고회(온라인)가 2026년도로 연기됨에 따라 발생하였음.

- 동 사업은 국제기구 유엔개발계획(UNDP)⁵⁾과의 협력하에 서울시의 건설정보관리시스템을 비롯한 서울시 청렴건설행정시스템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시스템 도입에 관심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정책공유 워크숍을 개최하는 사업으로,

- 2024년도부터 튀르키예와 대외협력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사업 진행상황을 공유하기 위한 온라인 성과보고회를 개최하려하였으나 상대국인 튀르키예 측의 현지 사정(중동 정세 불안 등)에

5)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국제연합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계획을 조정·통일하는 기구

따른 연기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할 것이며 향후 연기된 성과보고회 일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다음으로, ‘기본경비’는 정책사업 수행 부서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서 당해연도 예산현액 7억 63백만원 대비 11.5%인 8천 8백만원을 불용하였는데,
 -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공공운영비 1천 3백만원(22.0%), 국내여비 5천 9백만원(31.4%)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이는 기본경비가 현원을 기준으로 일괄 산출되는 경비임에 따라 국내여비 또한 동일 기준으로 편성되었으나 부서별 실제 출장 수요가 상이하여 국내여비 및 공용차량 유지관리 비용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각 부서별 출장 빈도 등 실집행 가능범위를 보다 면밀히 고려하여 불용률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

[표] '기본경비' 예산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액)	불용율 (%)	비 고
기본경비	763	675	88	11.5	
사무관리비	381	366	15	3.9	집행잔액
공공운영비	59	46	13	22.0	공용차량 유지관리 비용 절감
국내여비	188	129	59	31.4	불요불급한 출장 자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3	23	-	0.0	-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7	7	-	0.0	-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	30	-	0.0	-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75	74	1	1.3	집행잔액

다) 예산이용 · 전용 · 이체 · 변경 사용

- 예산의 이용 · 전용 · 이체 · 변경 사용은 없음.

라)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지출 없음.

마) 명시이월

- 명시이월 없음.

바) 사고이월

- 사고이월 없음.

[붙임]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 해당없음.